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시행 2024.09.15.] [2024.09.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2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2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3
제2장 전체학생총회.....	5
제1절 연석전체학생총회.....	5
제2절 전체학생총회.....	6
제3장 학생총투표.....	8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0
제1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10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1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15
제1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15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16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18
제6장 총학생회장단.....	20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23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25
제9장 단위기구.....	26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26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27
제10장 특별기구.....	29
제11장 재정.....	33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34
제13장 회칙·세칙·규칙.....	35
제1절 통칙.....	35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35
제3절 세칙·규칙.....	36
부칙.....	38

제1장 총칙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교수, 교직원, 동문과 더불어 대학의 4주체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과 건학이념인 수(修), 기(己), 치(治), 인(人), 교시인 인(仁), 의(義), 예(禮), 지(知)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이원화 캠퍼스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소속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 (정회원과 준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휴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본회 산하 의결기구 발의권
 -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 4.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제7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 캠퍼스 총학생회, 연석전체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을 둔다.

제8조 (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제9조 (명칭)

- ①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캠퍼스회”)라 한다.
- ② 양 캠퍼스의 캠퍼스회를 각각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라 한다.

제10조 (목적)

캠퍼스회는 캠퍼스 내 독자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생사회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설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각각 둔다.

제12조 (지위 및 의무)

- ① 캠퍼스회는 각 캠퍼스를 대표하는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 ② 캠퍼스회는 본회를 구성하는 조직으로서, 본회를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원)

캠퍼스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소속 캠퍼스 회원으로 한다.

제14조 (정회원과 준회원)

캠퍼스회 회원의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은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캠퍼스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 (캠퍼스회의 구성)

캠퍼스회는 캠퍼스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1절 연석전체학생총회

제17조 (지위)

연석전체학생총회(이하 “연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연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9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총회를 주재한다.
- ② 연석총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 ①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연석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1조 (업무 및 권한)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총회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3.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4. 기타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22조 (개회)

- ① 연석총회는 각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연석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 ① 연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안전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최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석총회의 안전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 3호의 안전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총회

제25조 (지위)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는 캠퍼스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총회는 캠퍼스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7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8조 (소집)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 3.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전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9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전체학생총회 안건의 상정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탄핵안
4. 기타 캠퍼스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30조 (개회)

- ① 총회는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총회의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9조제3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33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연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투표권)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35조 (시행 및 공고)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②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발의 즉시 학생총투표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생총투표는 발의 공고로부터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로부터 5일 후에 시행할 수 있다.

④ 투표 실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투표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제5호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1. 안건
2. 안건에 대한 설명
3. 본조 제1항에 의한 시행 근거
4. 시행 일시
5. 투표소 설치 장소

제36조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이하 “총투관위”)는 투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② 총투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3.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③ 학생총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④ 총투관위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전인 경우 발의 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⑤ 총투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총투관위는 투표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총투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투표관리위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

력을 모집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

- ① 학생총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한다.
- ②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38조 (준용)

기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9조 (캠퍼스회 개별 시행)

- ① 학생총투표는 안건에 따라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캠퍼스회 개별 시행 시에는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시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②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 시행한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해당 캠퍼스회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지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이하 “연학대회”)는 연석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4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본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42조 (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대의원의 출결)

- ①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학대회를 주재한다.
- ② 연학대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소집)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연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② 연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45조의2 (회의의 공개)

①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학대회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3.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5. 기타 연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② 연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개회)

① 연학대회는 각 캠퍼스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연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 (의결)

연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학대회의 안건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46조제1항제4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50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캠퍼스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5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반장 또는 1~2학년대표 · 3~4학년대표
 5.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 ④ 본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선출되거나 소속 단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52조 (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대의원의 출결)

- ①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확대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
- ②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③ 위임장과 결석계는 전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의장)

-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전학대회를 주재한다.
- ②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55조 (소집)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④ 전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건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5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대회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 및 권한)

-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
 - 2. 학생회비 배분안
 - 3.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 4.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인준 및 해임

5. 총회 안건의 상정
 6. 연학대회 안건의 상정
 7.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탄핵안 발의
 8. 학생회비 인상 · 인하
 9. 연학대회 소집 요구
 10.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11. 기타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 ② 전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개회)

- ① 전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전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 (의결)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56조제1항제7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제60조 (지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6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중앙운영위원(이하 “연석중운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본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연석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의무)

- ① 연석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연석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연석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위원의 출결)

- ① 연석중운위원이 연석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석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연석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중운을 주재한다.
- ② 연석중운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 (소집)

① 연석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로부터 반기에 한 번씩,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의장단의 요구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66조 (업무 및 권한)

연석중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제반 사업
2.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상정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4. 연학대회 안건의 상정
5. 본회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
6. 총학생회칙 유권해석
7.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8. 연학대회 소집 요구

제67조 (개회)

① 연석중운은 각 캠퍼스회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② 연석중운은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 (의결)

연석중운은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석중운의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69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70조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하 “중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71조 (위원의 의무)

- ① 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위원의 출결)

- ① 중운위원이 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중운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 (의장)

- ①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74조 (소집)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74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운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및 캠퍼스회 제반 사업
2. 학생회비 배분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3.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 설치
5. 기타 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6. 연석중운 안건의 상정
7.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진행에 대한 조정
8.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9. 전학대회 소집 요구
10. 연석중운 소집 요구

제76조 (개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77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제78조 (확대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이하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9조 (구성)

- ① 확대회의의 구성원을 “확대운영위원”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이하 “확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
- ③ 각 단위의 확대운영위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80조 (위원의 의무)

- ① 확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확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확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위원의 출결)

- ① 확운위원이 확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확대회의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확운위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 (의장)

- ① 의장은 확대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확대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83조 (소집)

- ① 확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확대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② 소집일은 요구 직후 예정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업무 및 권한)

- ① 제59조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전학대회의 안건을 전학대회와 동일한 절차로 심의·의결한다.
- ② 제13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을 결정한다.
- ③ 그 밖의 업무 및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제85조 (개회)

- ① 확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확대회의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6조 (의결)

확대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학생회장단

제87조 (지위 및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연석총회, 총회, 연합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소속 캠퍼스회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의무)

-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 총회, 연합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칙을 준수하며, 임기 초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이 숙지해야 할 총학생회칙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석총회, 총회, 연합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결산안, 사업 계획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은 소속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집행국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에게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로 전환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및 선거운동본부를 그 즉시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차기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경우, 인수위원을 두지 않는다.
-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인계
 2. 총학생회 집행기구의 조직·기능 및 예·결산 현황의 파악
 3. 기타 총학생회 집행기구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본조 제3항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해산한다.

제90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차기 선거로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③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포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1조 (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 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
 2.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4. 캠퍼스회 부총학생회장
- ③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전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 ④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91조의2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1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연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연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연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연석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연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전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캠퍼스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캠퍼스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9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93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궐위·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 일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각 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2.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경우,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5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96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집행위원 중 1인 이상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7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선출된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8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양 캠퍼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총회, 연학대회, 연석중은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제99조 (준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00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01조 (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집행국은 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102조 (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국장 중 1인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집행위원)

- ①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04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2. 의결기구에 사업 보고, 운영 계획, 예·결산안의 제출
3. 본회 및 캠퍼스회의 집행 전반

제105조 (공동 운영)

각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양 캠퍼스회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총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른다.

제9장 단위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6조 (지위)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6조의2 (독립단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단위의 지위를 인정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 또는 학과
 2.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
- ②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회원)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8조 (조직)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대표자회의 및 단과대학·독립단위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9조 (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연석중앙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본조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1조 (독립성의 보장)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준용)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13조 (지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14조 (회원)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5조 (조직)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부·학과·전공 학생총회 및 학부·학과·전공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6조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재정)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8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단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준용)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또는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10장 특별기구

제120조 (특별기구의 성립 요건)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캠퍼스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캠퍼스회 회원 중 특정 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캠퍼스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캠퍼스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캠퍼스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캠퍼스회의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 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121조 (분류, 구성, 위상)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독립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분한다.

1.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현재의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다.
2.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킨다.
3.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제120조제4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를 포함한다.
4.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학과나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연합 등을 가리킨다.

제122조 (절차)

- ①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임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75조제4호를 따른다.
- ②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집행위원회 구성원 명부
 3. 소개서
 4. 전년도 활동보고서
 5. 사업계획서
 6. 서약서

- ③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④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 ⑤ 특별기구 간 전환을 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따른다. 단,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⑥ 캠퍼스회 산하의 특별기구는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캠퍼스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3조 (재정)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
- 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2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특별기구장단의 지위)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은 중앙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은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그 밖의 특별기구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26조 (특별기구의 해체)

특별기구 해체 시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단,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그 역할이 다하면 자동으로 해소된다.

제127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기구 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128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30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
-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치회비”라 한다.

제131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단,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초반기: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중반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종반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2조 (예산)

- ① 예산은 매 학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전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반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거부권)

-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학생회비의 징수는 학교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인출 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③ 학생회비의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136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불투명한 재정 운용 감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의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1. 중앙운영위원 중 2인
 - 2.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2인
 - 3. 각 단위의 집행위원을 제외한 회원 2명
-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 단위에 대해 예·결산자료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 대표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 활동 결과를 발족 후 2주 이내에 학우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38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139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석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40조 (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각 캠퍼스회 회원 2인으로 하여 4인 1조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4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3.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중선관위는 투표일 5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⑤ 중선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중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2조 (당선)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43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 또는 탄핵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4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통칙

제145조 (정의)

- ① 총학생회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있다.
 1. 총학생회칙
 2. 세칙
 3. 규칙
- ②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에 있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세칙은 총학생회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총학생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총학생회칙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④ 규칙은 상위 규정이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위 규정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6조 (규정의 위계)

- ① 총학생회칙은 세칙에 우선하고 세칙은 규칙에 우선한다.
- ② 상위 규정에 충돌하는 하위 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세칙·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 ② 회개소위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2.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회칙개정소위원장은 회개소위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회개소위 설치의 경우, 회개소위를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연석회개소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제148조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3.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연석회개소위 전원의 연서

제149조 (개정안 공고)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②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150조 (개정안 의결)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석중운의 심의를 거쳐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한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 (개정안 정리)

- ① 연석중운은 총학생회칙 개정 의결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연석회개소위의 발의에 의한 개정일 경우 연석회개소위가 연석중운 대신 개정안을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 (공포)

- ①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4. 시행일
 - 5. 상시 열람 방법
-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3절 세칙·규칙

제153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 ② 세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4조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규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한 캠퍼스 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연석중운 또는 연석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해당 캠퍼스회 중운 또는 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 ③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5조 (선거 관련 규정의 예외)

- 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선거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 ② 연석중선관위 구성 이전에 선거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경우, 제153조 또는 제154조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연석중운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개정 전 총학생회칙 체제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회칙 공포 시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 회계, 대표자 선출 등의 체제는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 범위의 해석)

캠퍼스회에 관한 모든 조항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의 제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